

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임규호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340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10월 16일
발 의 자: 임규호 의원(1명)
찬 성 자: 김성준, 김인제, 박승진,
봉양순, 서준오, 송도호,
왕정순, 이민옥, 이소라,
이영실, 이원형, 임만균,
정준호 의원(13명)

1. 제안이유

- 예산낭비와 부실.방만 운영 및 지속적으로 사회적 논란을 촉발해 온 지역축제 판매 먹거리의 과도한 가격 문제 등을 본보기삼아, 지역 축제 전반의 공공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
- 지역축제의 계획.준비.실행.평가 등 전 과정에 대한 관리.감독을 강화함으로써 부실.방만한 지역축제를 방지하고, 예산낭비를 근절하는 건전재정을 달성함으로써 시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건강한 지역축제를 육성.지원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제6조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11. 축제 판매상품의 가격 안정에 관한 사항
- 나. 제16조제2항 중 “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”을 “판매상품의 공정가격을 준수하고,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”으로 한다.

다. 제18조제3항 중 “위하여”를 “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축제 목표의 적절성
2. 축제 프로그램의 우수성
3. 인력 배치 및 운영의 적절성
4. 행사장 안전 관리
5. 화장실 등 편의시설 관리
6. 축제 홍보의 효과성 및 축제 정보의 접근성
7. 상품 판매 가격의 공정성
8. 친환경적 행사 운영
9. 축제 참여자 만족도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문화예술진흥법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. 축제 판매상품의 가격 안정에 관한 사항

제16조제2항 중 “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”을 “판매상품의 공정가격을 준수하고,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”으로 한다.

제18조제3항 중 “위하여”를 “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축제 목표의 적절성
2. 축제 프로그램의 우수성
3. 인력 배치 및 운영의 적절성
4. 행사장 안전 관리
5. 화장실 등 편의시설 관리

6. 축제 홍보의 효과성 및 축제 정보의 접근성
7. 상품 판매 가격의 공정성
8. 친환경적 행사 운영
9. 축제 참여자 만족도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축제위원회의 설치) 시장은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‘서울특별시 축제위원회’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</p> <p>1. ~ 10.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11. (생략)</p> <p>제16조(축제의 지원·육성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축제는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에 따라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제18조(축제의 평가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시장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정량적·정성적 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</p>	<p>제6조(축제위원회의 설치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11. <u>축제 판매상품의 가격 안정에 관한 사항</u></p> <p>12. (현행 제11호와 같음)</p> <p>제16조(축제의 지원·육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판매상품의 공정가격을 준수하고,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</u>----- 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8조(축제의 평가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<u>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</u> <u>여</u> -----</p>

른 등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④ (생 략)

1. 축제 목표의 적절성

2. 축제 프로그램의 우수성

3. 인력 배치 및 운영의 적절성

4. 행사장 안전 관리

5. 화장실 등 편의시설 관리

6. 축제 홍보의 효과성 및 축제
정보의 접근성

7. 상품 판매 가격의 공정성

8. 친환경적 행사 운영

9. 축제 참여자 만족도

④ (현행과 같음)

문서 번호

2023101600000010

비대상사유서

요청인 : 임규호 의원

담당 : 오희선 과장
이정수 팀장
손제승 주무관

접수일 : 2023.10.16.

회신일 : 2023.10.18.

내용문의 : 02-2180-7954

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

목 차

1. 판단 근거
2. 작성자



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
재정분석담당관
Seoul Metropolitan Council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6조(축제위원회의 설치)제11호 및 제16조(축제의 지원·육성)제2항, 제18조(축제의 평가)제3항을 변경·신설한 개정안으로 축제위원회의 경우 관련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으나 기추진 사업(붙임 참조)으로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	오희선
추계세제팀장	이정수
주 무 관	손제승

☎ 02-2180-7954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시 첨부하지 않는 자료입니다.

「서울특별시 축제위원회」 재구성 계획

「서울특별시 축제위원회」 위촉직 위원의 임기만료('23.7.14字)에 따라 축제위원회를 재구성하고자 함.

I 축제위원회 현황

□ 구성근거 : 「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

제7조(축제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...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...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... 위촉직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2명, 서울연구원 소속 축제분야 선임연구위원급 이상 연구원 1명과 축제감독, 대학교수 등 문화예술 또는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.

□ 위원현황 : 총 16명(위원장 : 류정아 위원) ※ 붙임1 참조

○ 위촉직(13명) : 축제감독 등 축제전문가 7명, 교수 5명, 서울연구원 1명

- 임기 : '21. 7. 15. ~ '23. 7. 14.(2년) / 연임 2회 가능

○ 당연직(3명) : 문화본부장, 관광체육국장, 문화재단 대표이사

□ **운영실적**(‘21. 7. 15. ~ ‘23. 7. 14.)

○ 본 위원회 : 2회(’22. 2. 11, ’22. 5. 24.)

○ 실무위원회 : 1회(’21. 9. 27.)

Ⅱ **위원 재구성(안)**

□ **재구성 사유** : 위촉직 위원 임기만료

□ **임 기** : 2023. 7. 15. ~ 2025. 7. 14.

□ **위촉직 위원 재구성 적정여부**

○ 위원구성 다양화 : 적정(조직담당관 검토 완료)

- 3개 위원회 초과 중복, 같은 위원장 소속 위원회 2개 초과, 6년초과
연임여부 해당없음

자료 : 2023년 서울시 문화본부 문화예술과-10061 발췌